원 고 용

기일	. . .	:

주심	가	나	다

부본 영수
2012. . .

사 건 : 2010재누229 재심청구의 소

원 고(재심원고) : 임그루

피 고(재심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케이티

답 변 서

서울고등법원 제 6 행정부 귀중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한국산업인력공단 8층)
〒121-757

중앙노동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법무지원과
TEL. (02)3278-8672~83
FAX. (02)3278-8689

답 변 서

사 건 : 2010재누229 재심청구의 소

원 고(재심원고) : 임그루

피 고(재심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케이티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재심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주위적으로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으로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원 판결의 결과

가.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0재누62 및 대법원 2011두11372 판결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청구하여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된 것입니다. 또한, 위 판결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행위는 정당한 인사 조치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는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원고의 증거와 주장에 관하여 판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2. 결론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고 자 료

1. 재심원고 관련 소송현황 1부.

2012. 2. .

위 피고의 소송수행자 김 재 왕 (인)

서울고등법원 제 6 행정부 귀중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한국산업인력공단 8층)
㉾121-757

중앙노동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법무지원과
TEL. (02)3278-8672~83
FAX. (02)3278-8689

참 고 자 료

<원고 임그루 관련(99구23983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심현황>

행정법원(재심대상소송)	고등법원	대법원
99구23983 99.8.11/00.5.12(기각)	2000누6383 00.6.8/00.9.7(기각)	2000두8004 00.9.29/01.1.8(심리불속행기각)
(2000누6383)	2001재누15 01.2.1/04.5.14(기각)	2004두6013 04.6.10/04.8.16(심리불속행기각)
(2001재누15)	2004재누122 04.9.20/05.6.15(기각)	2005두7624 05.7.14/06.11.10(심리기각)
(2004재누122)	2006재누171 06.11.27/07.7.13(기각)	2007두17809 07.8.27/07.10.25(심리불속행기각)
(2006재누171)	2007재누192 07.11.22/08.4.23(기각)	2008두7045 08.5.9/08.7.24(심리불속행기각)
(2000누6383)	2008재누236 08.8.4/09.3.26(각하)	2009두5589 09.4.21/09.6.25(심리불속행기각)
(2008재누236)	2009재누189 09.7.20/09.11.10(기각)	2009두22010 09.11.25/10.2.11(심리불속행기각)
(2009재누189)	2010재누62 10.3.2/11.7.8(각하)	2011두11372 11.4.19/11.8.18(심리불속행기각)
(2010재누62)	2011재누229 11.9.16/진행중	

※해당일자는 접수일/판결일임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한국산업인력공단 8층)
〒121-757

중앙노동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법무지원과
TEL. (02)3278-8672~83
FAX. (02)3278-8689